

(사) 한국조경학회 선거관리규정

2010년 3월 26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조경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이하 회장 등이라 함) 각 1인의 선출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과 차기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승인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회 회장은 선거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 연륜과 덕망이 높은 자를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선거일정 및 입후보 등록 공고

2. 입후보자의 자격심의 및 명세 공고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및 시행

5.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제 3장 피선거권과 당선자 결정

제5조 (입후보 자격)

1. 회장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부회장 1회 또는 상임이사(집행이사 포함)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집행이사 포함) 1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3. 감사에 입후보자는 자는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입후보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장 등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장 등 입후보자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모든 입후보자의 명세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견발표)

1. 회장 등 입후보자는 학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그리고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구두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소견발표의 분량, 회수,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8조 (투표 및 당선자 결정)

1. 임원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와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투표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당선자는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유효투표 중 최대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일후보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9조 (공명선거 의무 등)

1. 투표권자 및 입후보자는 본인 또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나 약속을 하는 행위
 - 2)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임의로 비방하는 행위
 -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위
2.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제지,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여부, 시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공표여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선출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